2021년 이렇게 바뀝니다.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

◇ 건설폐기물 처리확인제도 등 '21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정책 및 제도 안내

2021년부터 시행되는 '건설폐기물 처리확인제도' 및 '분별해체제도'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'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 주요내용 알림'(정책기획-645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건설폐기물 처리확인제도 도입

○ **[주요내용]** 배출자가 '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' 제출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

- 한국환경공단은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자료*를 처리실적 증빙서류로 첨부할 수 있도록 올바로시스템 개선

* 신용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, 처리실적 증명자료(한국환경공단 양식) 등

○ **[관련규정]** 「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」 제27조

2. 건설폐기물 분별해체제도 도입

○ **[주요내용]**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정한 구조,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 하도록 함

<적용대상 구조물 및 폐기물(안)>

- **(대상 구조물)** 공공기관에서 철거하는 바닥면적 500㎡ 이상의 건축물
- **(우선 제거 대상 폐기물)** 건설폐토석, 건설오니, 혼합건설폐기물, 그 밖의 폐기물 등을 제외한 총 14종의 건설폐기물

※ 지난 '20.9.7일 입법예고 된 「건설폐기물법 시행령」 개정(안)에 따른 내용이며 공포 시 변경될 수 있음

○ **[관련규정]** 「건설폐기물법」 제4조

3. 습식선별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신고 등 조치기한 연장

○ **[주요내용]** 습식선별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신고 등의 조치기한 1년 연장(당초 '20.12.31限 → 변경 '21.12.31限)

○ **[관련규정]**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3 제2호다목

4.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

○ **[주요내용]**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(E-9, H-2)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

<신고대상 및 방법>

▪ **(신고대상)**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체류 자격이 방문취업(H-2) 또는 비전문 취업(E-9)인 외국인 근로자

▪ **(신고방법)**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(지사)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(상시근로자)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(일용근로자)

※근로유형별 신고기한

구분	'21.1.1일 현재 근무 중인 경우	'21.1.1일 이후 고용한 경우
상시근로자	- '21.2.15일까지 취득신고 (취득일 : '21.1.1)	- 고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(취득일 : 고용일)
일용근로자	- '21.1.1일 이후 근무한 경우 근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	

○ **[관련규정]**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의2

5.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○ **[주요내용]**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

<지원사업 주요내용>

▪ **(지원대상)**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(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00,500원 이하)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

▪ **(신청기간)** '21.1.1 ~ '21.11.30(접수기간 내 상시 신청 가능)

▪ **(신청방법)** 온라인*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

* 국민연금 EDI서비스(https://edi.nps.or.kr/),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(https://www.4insure.or.kr) 등

▪ **(지원금액)**

구분	5인 미만 고용 사업장	5~30인 미만 고용 사업장	일용직 근로자
지원금액	7만원/월	5만원/월	근로시간 및 일수에 비례하여 지원

○ **[관련규정]** 「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」 제5조

20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안내

▢ **지원대상**

○ 해당 지자체 소재 중·소기업 중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1~5종 사업장

▢ **지원내용**

○ (방지시설 설치비용)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

○ (사물인터넷 설치비용) 차압계 및 압력계 등 설치비용 지원

▢ **접수기간 : 지자체별 별도 공고**

- 지자체 또는 정부24 홈페이지(https://www.gov.kr/portal/locgovNews)에서 확인 가능

▢ **문의 :** 관할 지자체 대기관리과